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25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이만희·이달희·조승환

서천호 · 김소희 · 배준영

이종배 • 조은희 • 정동만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·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, 아울러 산림경영·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(산림공간정보)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하고, 산림공간정보를 통해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·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함(안 제3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,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33조의2(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)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(이하 "산림공간정보"라 한다)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다.

- ②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의 주기적인 취득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성 및 유·무인비행장치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공간정보는 산림자원 조사, 조림, 숲가꾸기, 입목수확 등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정보 및 산불,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한 정보, 해외산림자원 등 접근불능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포함할 수 있다.
-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간정보를 통하여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·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3조의2(산림공간정보의 취득
	과 관리)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
	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
	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
	요한 정보(이하"산림공간정보"
	라 한다)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의
	주기적인 취득과 효율적인 관리
	를 위하여 위성 및 유·무인비
	행장치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	③ 제1항에 따른 산림공간정보
	는 산림자원 조사, 조림, 숲가꾸
	기, 입목수확 등 산림경영활동
	에 대한 정보 및 산불, 산림병해
	충 등 산림재난에 대한 정보, 해
	외산림자원 등 접근불능지역에
	대한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	<u>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</u>
	림공간정보를 통하여 산림의 변
	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
	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・집행
	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
	<u>다.</u>

<u>제33조의2</u> (생 략)	<u>제33조의3</u> (현행 제33조의2와 같
	후)